

청년주거급여지원사업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가구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원

지원 대상

신청자	나이	만 19세~30세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중위소득 46%이하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미혼청년•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분리 거주 예외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농촌(군)으로 분리거주 하는 경우•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담당공무원

지원 내용

-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 지급일 매월 20일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지원 절차

- ◇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지참)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사실확인 증빙서류 / 최근3개월내 임차료 증빙서류
- ◇ 신청 및 진행과정
 - 신청(행정복지센터) >>> 소득재산 및 중복수해조사 >>> 결과 / 발표
 - >>> 이의신청 >>> 급여지급 및 관리
- ◇ 문 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행정복지센터